

# 그룹 환경 · 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Environmental & Social Risk Management Framework

목차 .....	- 2 -
1. 제정목적 .....	- 3 -
2. 적용범위 .....	- 4 -
3. 조직체계 .....	- 5 -
4. 글로벌 파트너십 .....	- 6 -
5.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 .....	- 7 -
1) 배제 영역 (Exclusion area) .....	- 7 -
2) 주의 영역 (High-caution area) .....	- 8 -
3)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	- 9 -
4) 친환경 경제활동 지원 .....	- 13 -
6. 산업별 가이드라인 .....	- 15 -
1) 농업 (KSIC: A01) .....	- 15 -
2) 임업 (KSIC: A02, C17) .....	- 18 -
3) 석탄 및 석유 (KSIC: B05, D35) .....	- 20 -
4) 광산 (KSIC: B06, B07) .....	- 25 -
7. 주제별 가이드라인 .....	- 29 -
1) 생물다양성 .....	- 29 -
2) 기후변화 .....	- 31 -
3) 순환경제 .....	- 33 -
8. Appendix .....	- 34 -

## 1. 제정목적

글로벌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있어, 원자재 채굴 및 공급, 재화와 상품의 생산, 용역과 서비스의 제공, 에너지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산업 부문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활동에 따른 환경·사회 측면의 부정적 영향력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위험과 영향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산업 활동의 중심인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환경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운영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사회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함을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산업 부문이 환경, 근로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축소, 회피할 것을 장려하고자 본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Environmental & Social Risk Management Framework)」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모범규준은 환경·사회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산업 부문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과 지침을 기반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본 모범규준은 우리금융지주 ESG경영부 주관으로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및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연 1회 이상 ESG협의회를 통해 금융산업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현황과 산업별 ESG 이슈를 점검하고, 이를 산업 부문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모범규준은 당 그룹의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등 금융활동 전반의 환경·사회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방향성, 방법,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2. 적용범위

우리금융그룹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Environmental & Social Risk Management Framework)」는 ①배제영역(Exclusion area) 선정과 관리, ②주의영역(High-caution area) 선정과 관리, ③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의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④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지원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⑤농업, 임업, 석탄 및 석유, 광산 산업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시 기준이 되는 산업별 가이드라인, ⑥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순환경에 관련 우리금융그룹의 접근방식을 안내하는 주제별 가이드라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적도원칙에 가입하였거나, 적도원칙 적용이 가능한 자회사의 경우, 적도원칙 취급 프로세스에 따른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 취급 프로세스는 신규로 취급되는 프로젝트 중 프로젝트 총액이 US\$10백만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프로젝트 총액이 US\$10백만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총 대출금액이 US\$50백만 이상의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본 모범규준을 프로젝트파이낸싱 외 기업여신, 일반투자, 자산운용 등 그룹 사업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며, 개별 금융활동별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대상 자격 및 요건, 심사 지표 및 기준, 심사 절차와 일정 등을 자회사별 세부 실무지침을 통해 별도 개발·운용하고자 합니다. 본 모범규준의 적용 예정 대상은 그룹이 설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여신, 일반투자, 자산운용 등의 금융활동과, '배제 영역', '주의 영역', '산업별 가이드라인', '주제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잠재적 위험 산업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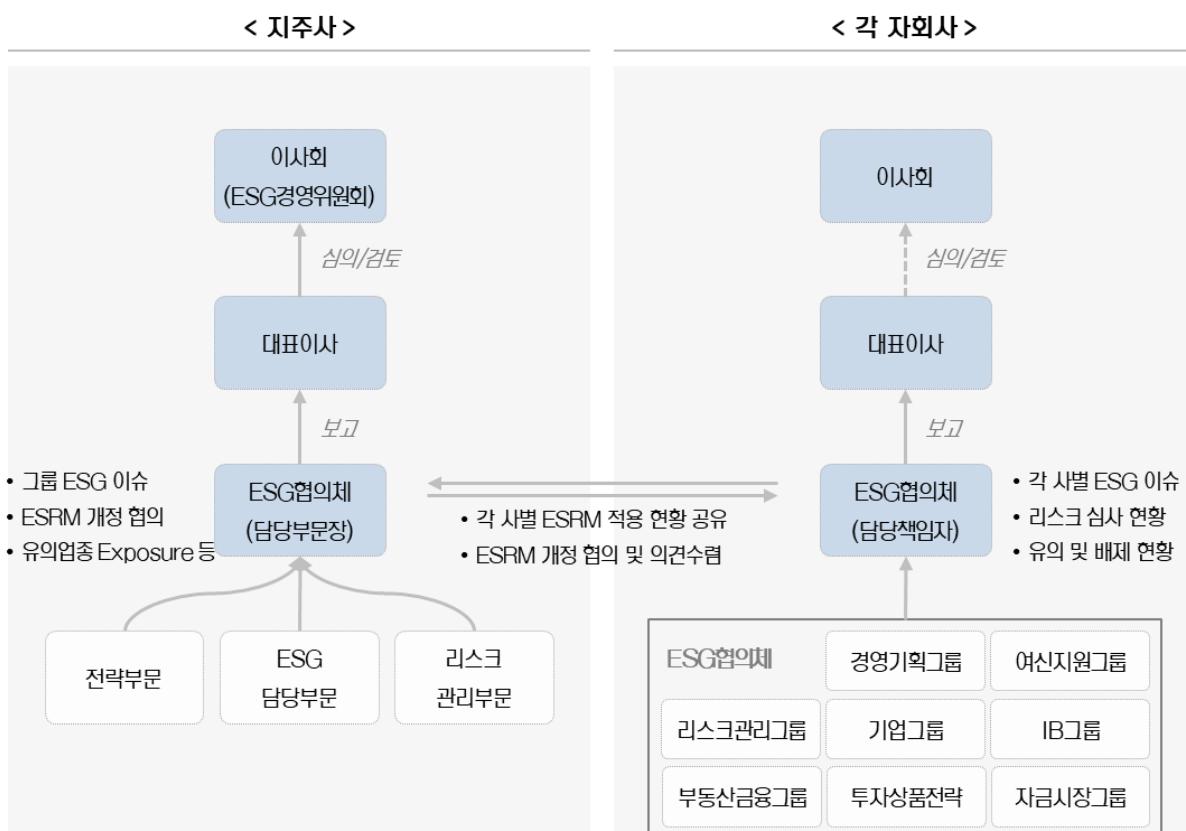
본 모범규준은 우리금융그룹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 규정, 금융당국의 정책, 표준, 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우리금융그룹의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 기업여신, 일반투자, 자산운용 등의 사례별로 본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둘 수 있습니다.

### 3. 조직체계

우리금융그룹은 본 모범규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포함하여 지주 및 자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환경·사회 위험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기구와 조직은 심의·의결, 관리·감독,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ESG 금융원칙에 의거하여 본 모범규준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산하 ESG 경영위원회는 ESG 금융원칙 및 본 모범규준 이행을 위한 전략, 정책, 추진현황 등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가 참여하는 ESG 협의체를 통해 ESG 금융원칙 및 본 모범규준에 기반한 자회사 ESG 금융활동을 관리합니다.

#### [ESRM 조직체계 예시]



## 4. 글로벌 파트너십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금융의 기능을 통한 산업 부문 전반의 환경·사회 위험을 완화, 축소, 회피하는 지속가능금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이행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국제적 원칙 및 표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환경·사회 위험 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지표와 기준 등)을 개발 및 확산하는 산업 이니셔티브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

- UNGC, UN Global Compact
- UNEP FI,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 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 EP, Equator Principles
-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 Business Ambition for 1.5°C
-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PBAF, Partnership for Biodiversity Accounting Financials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 5.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

우리금융그룹은 조직운영 전반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의 환경·사회 위험을 사전에 식별·예방하고, 잠재되어 있거나 확인된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완화 조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배제 영역', '주의 영역',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친환경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본 모범규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배제 영역', '주의 영역',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친환경 경제활동 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이 우리금융그룹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별 법률 및 규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등 그룹 사업활동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본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과표준' (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등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 및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 1) 배제 영역(Exclusion area)

우리금융그룹은 환경·사회적으로 위험이 명확하게 식별되거나, 부정적 환경·사회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산업 부문, 경제활동,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등을 배제(Exclusion)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이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등을 배제하는 산업 부문, 경제활동, 프로젝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제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

국가별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의 행위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의 경제활동에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투입하는 행위
불법적 방식으로 성행하는 도박·포르노 산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관련된 행위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 감시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의 구매, 생산, 판매, 사용 등의 행위
신규 석탄채굴 사업을 개발·확장하거나, 또는 신규 석탄채굴 사업을 지원하는 행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증축하거나, 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지원하는 행위

## 2) 주의 영역(High-caution area)

우리금융그룹은 환경, 안전, 노동, 윤리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과표준(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을 참조하여 환경·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부문, 경제활동, 프로젝트 등을 주의 영역(High-caution area)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역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등이 실행되는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추가적으로 주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 위험 및 부정적 영향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도원칙 대상 사업 중 환경·사회 위험이 높은 사업의 경우 위험 및 부정적 영향 검토 과정의 객관성·신뢰성·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독립된 제3자기관을 통해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 평가 실시에 따른 제반비용은 적도원칙에 따릅니다. 향후, 우리금융그룹은 국내외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금융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도원칙 취급 대상 사업(프로젝트) 외 기업여신, 일반투자, 자산운용 등 모든 금융활동별로 독립된 제3자기관의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시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는 산업 부문, 경제활동, 프로젝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의 영역에 해당하는 산업 부문]

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는 농업 부문
국제적 보호지역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임업 부문
기존 석탄채굴 사업을 영위하거나, 석탄채굴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종
기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영위하거나, 석탄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종
기타 다(多)배출 업종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 **3)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우리금융그룹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모범규준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 기업여신, 일반투자, 자산운용 등 그룹의 금융활동(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에 대해 환경·사회 위험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취급하는 경우 적도원칙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론에 따라 환경·사회 위험을 심사합니다. 환경·사회 위험이 높아 독립된 심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된 환경·사회 위험 및 이슈를 기반으로 차주(고객)와 합의된 저감대응계획 및 사후 이행방안을 준수하도록 서약조건을 약정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기간 동안 차주(고객)의 환경·사회 위험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① 리스크 사전검토(Screening)**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 산업 부문 및 경제활동(프로젝트)이 본 모범규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적도원칙 대상 여부, 프로젝트 유형과 목적 등 사업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환경·사회 위험을 심사합니다.

#### **② 리스크 등급분류(Categorization)**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 산업 부문 및 경제활동(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적도원칙의 예비 환경·사회 등급분류 기준(A등급, B등급, C등급)을 준용하여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 정도를 분류합니다.

#### **③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Assessment)**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이 상당하거나(A등급), 제한적이지만 발생가능성 높은(B등급) 산업 부문 및 경제활동(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구체적 위험 및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필요 시, 독립된 제3자 기관의 실사(Due-diligence) 활동을 수행합니다.

#### **④ 금융계약서 서약조항(Commitment)**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 산업 부문 및 경제활동(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차주(고객)가 위험을 완화·저감하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극적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금융계약서 등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차주(고객)는 환경·사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이해관계자 참여, 고충처리 메커니즘 등 환경·사회 위험 관리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을 포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리스크 관리 정기점검(Monitoring)**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 산업 부문 및 경제활동(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을 완화·저감하기 위해 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사회 위험이 높아 독립된 심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사회 이슈 사항을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모니터링 및 공개합니다. 차주와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를 결정합니다.

##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체크리스트]

1. 경영체계	
1-1. 차주는 환경·사회 경영을 위한 정책·규정 개발, 조직·업무분장 구성, 시스템·절차 수립, 지표 및 성과관리 등 전사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가? (ex. ISO26000)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2. 차주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가능하거나 잠재되어 있는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을 식별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3. 차주는 위에서 식별한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정의하고 관련 데이터 SET 을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4. 차주는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을 완화·저감하기 위한 계획(투자예산, 인력구조, 설비운영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5. 차주는 사업운영 전과정(Life-Cycle)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 환경영향	
2-1.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거하여, 사업장 신설, 증설, 폐쇄 시 환경영향평가(EIA) 또는 유사한 환경자원에 대한 의존도·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2.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국가 단위에서 제정한 환경영영시스템(EMS)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 3 자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가? (ex. ISO14001 등)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3.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NOx, SOx 등), 수질오염물질(BOD, COD 등) 데이터를 측정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4.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데이터를 유형(일반, 건설, 지정)별로 측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소각, 매립, 재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6. 글로벌 또는 국가별 (유해)화학물질의 수입·운송·저장·사용·생산 시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보·관리하고 있는가? 또한,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를 고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7.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난 3 년간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 노출 관련 사고(벌금, 과징금, 과태료, 행정제재 등)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3. 생물다양성

3-1. 사업장 주변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운영으로 인한 (예상) 생물다양성 영향을 분석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2. 사업장 주변(동일 행정구역, 또는 반경 2km 이내) 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IUCN Category Ia, Ib, II, III, IV) 지역이 있는가? 사업장 주변에 해당 지역이 있을 경우, 사업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완화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3. 사업장 주변 지역 또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 종(Species) 및 개체(Numbers)나, 서식지를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4. 문화유산

4-1.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는 지역, 또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에 문화유산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를 조사·분석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2.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문화유산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 이동-폐쇄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3. 사업장이 위치한 인근에 중요문화유산이 위치해 있을 경우, 해당 중요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적절한 활동과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5. 안전보건

5-1.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국가 단위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3자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가? (ex. ISO45001 등)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2. 정부기관에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인허가증 및 안전검사증을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3. 생산설비 및 작업기계 등에 안전장치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전장치나 비상정지장치 점검·보수 기록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4.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주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5. 사업 운영 시 직면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대응조직, 전파체계, 복구활동, 교육훈련 등)를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6.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소방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소방계획서, 소방완공검사필증, 소방설비작동점검보고서 등을 (연 1회 갱신)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7.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특히,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6. 노동인권

6-1. 모든 형태의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2. 아동노동 금지를 위해, 채용 시 연령을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또한, 출입신분증(ID 카드 등)을 발급하여, 사업장 출입 근로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3.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고 있지 않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4.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정해진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5.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해 기록되고 있으며, 기록된 초과근로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수당, 대체휴무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6.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사 및 단체교섭 권리(단체협약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며, 미이행 시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7. 근로자가 노동인권 이슈, 불만, 사건 등 고충을 접수하는 채널을 두고 있으며, 고충처리 절차와 일정, 피의자 조치, 제보자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7. 지역사회

7-1. (유해)화학물질의 수입-운송-저장-사용-생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안전 위험을 파악하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 시 대응계획 및 방제설비를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2. 사업운영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사회 환경·안전·보건 영향을 지역사회에 공시·협의·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3. 사업장 및 시설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접견 및 응대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 요소'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8. 원주민

8-1. 사업장 운영을 위해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 원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획득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8-2.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토지 또는 거주지 매입을 위한 상당금액을 보상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8-3. 원주민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원주민의 재정착 및 생존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제공하거나, 이에 상당금액을 보상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체크리스트는 적도원칙의 별지 'II: 환경·사회 평가문서에서 다루어져야 할 잠재적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예시목록'을 일부 참고하여 제시하였으며, 투자 대상 산업 부문, 경제활동, 프로젝트 등의 유형과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친환경 경제활동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보호, 자원순환, 오염물질 제거, 생물다양성 보전 등 인간과 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경제활동 분야를 선정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경제활동은 기업의 설립목적, 생산방식, 제품특성 자체가 친환경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활동 단위, 재생에너지 개발 등 특정 활동에 대해 친환경 적합성이 판단되는 프로젝트 단위, 특정 유형자산이 친환경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산설비 단위 등 다양한 활동에 적용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의 친환경 경제활동 지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하고 있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그룹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영역 의사결정과 각 자회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경제활동 지원 분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분야	경제활동
산업	탄소중립 핵심기술 제조,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증유 제조, 수소 제조, 암모니아 제조,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열에너지 저장,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운영·운영,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액화천연가스 (LNG) 기반 수소 (블루수소) 제조
수송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무공해 육상·철도 운송, 무공해 선박 운송,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무공해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도시·건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 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농업	저탄소 농업,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이산화탄소 포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연구개발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물	하·폐수 관리, 저영향 개발(LID), 물 공급, 대체 수자원 활용, 물 수요 관리, 물 재이용, 지하수 정화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억제,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 폐자원 재활용(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폐자원 열분해, 폐기물 에너지 회수
메탄가스 활용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악취 방지 및 저감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생물다양성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산림 생태계 복원,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생물종 보호·보전

## 6. 산업별 가이드라인

### 1) 농업 (KSIC: A01)

#### 소개

농업은 전 세계 인구 부양 및 건강 증진에 필요로 하는 팜유, 대두, 코코아, 커피 등과 같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농산품의 생산과 가공 등 농업 부문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백만 인구의 주요 수입원이나, 과도한 농업 활동은 생물다양성 훼손, 생태계 파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지역 원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 약속

우리금융그룹은 농업 부문의 근로자 노동권과 지역 원주민의 재산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대기, 수질, 토지 등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농업 관행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실행

우리금융그룹은 팜유, 대두, 코코아, 커피를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을 영위하는 산업 부문(프로젝트)을 대상으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TRS(Roundtable on Responsible Soy)' 등 농업 부문의 산업 이니셔티브 가입을 장려하며, 해당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를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의사결정 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회 위험 관리 지표와 기준을 제정 및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농업 부문(프로젝트), 3-5년 내 유관 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가입 또는 참여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농업 부문(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또는 투자지원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거나 실행한 이후, 해당 사업의 환경·사회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아래의 환경, 노동·인권, 지역사회,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위험관리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당한 위험 요인 및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는 농업 부문(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농업 부문 환경 · 사회 리스크 심사 항목]

생물다양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람사르 목록에 등재된 습지, 멸종제로제휴지역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IV지역, 이탄지대(Peatland)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적용을 받는 동식물종 또는 관련 제품의 거래 중 CITES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에 직접 연루되지 않아야 함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식시스템(Polyculture system, 서로 다른 먹이 습성을 가진 여러 종을 함께 양식)'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근로조건 및 인권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근로자가 고충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마련해야 함
근로자가 단체교섭 조직을 설립할 수 있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직·간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차별, 입사 지원자 간의 차별 등이 없어야 함
자연환경 보호,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지역주민 재산권 및 권리 존중
지역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를 얻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이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지역주민이 소유 및 임차하고 있는 토지를 강제적인 방식으로 몰수하지 않아야 함

식품 안전 및 이력관리
원산지-생산자-판매자 등 가치사슬 전반과 공동으로 식품의 안전조치 및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국제식품안전협회(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GFSI)에서 승인한 표준, 국가별 관련 인증제도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함

우리금융그룹은 농업 부문(프로젝트)의 유형과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환경·사회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다음의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일반

CO<sub>2</sub>, CH<sub>4</sub>, NO<sub>2</sub>의 직접 발생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용수 사용(예: 관개용수)을 최소화하며, 물스트레스가 심각한 지역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물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토양 염류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한 폐수처리 장치를 설비해야 함  
고탄소보존(High Carbon Stock) 지역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협력해야 함

#### 건강 및 안전

OHSAS1800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인증 계획을 수립해야 함  
안전보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식량 안보

수확, 보관 및 운송 중 식품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및 설비를 운영해야 함  
신규 농업 프로젝트 실행 시,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거나, 기존 작물을 대체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식량 안보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식품 안전 및 이력관리

ISO22000 인증(HACCP 원칙에 기반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보유하거나, 인증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농약 및 비료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스톡홀름 잔류성유기물협약(POP)에 따라 금지된 물질, 로테르담 협약 Annex III에 열거된 물질, WHO 1A급 또는 1B급으로 분류되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파라콰트(Paraquat)를 포함한 살충제 및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제화학사무국 SIN List에 포함된 살충제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통합 해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이어야 함

#### [가축 또는 가금류] 심사사항

동물복지에 관한 국제금융공사(IFC) 모범관행(Good Practice Note)을 준수하고 있거나, 준수 계획을 마련해야 함

## 2) 임업 (KSIC: A02, C17)

### 소개

2018년 UN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40억 헥타르의 숲이 있습니다. 약 30%는 주로 목재, 종이 및 식품 생산에 사용되며, 정식 목재 부문은 세계 경제에 6,000억 달러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25%는 원시림(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열대 지역에서 열대우림이라고 불리며,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식물 종의 상당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불법 벌목을 통한 산림 벌채는 환경과 사람에게 빈번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열대우림이 중요한 탄소 저장고인 만큼 기후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약속

우리금융그룹은 산림경영뿐만 아니라, 목재 및 펄프 등의 생산-가공-유통-변형-제조 활동을 영위하는 임업 부문(프로젝트)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림관리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산림지역을 유지·보존함과 동시에,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등 지속가능한 방식의 임업 관행을 장려합니다.

### 실행

우리금융그룹은 원시림, 열대우림,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IUCN Category Ia, Ib, II, III, IV),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High Conservation Values)의 벌채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파괴 위험 지역에서의 목재생산, 펄프생산 산업(프로젝트)에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할 경우, FSC 또는 PEFC 인증 획득을 요구하거나, 산림훼손 및 파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	위치	요구 사항
목재 조달	고위험 국가의 모든 벌목 현장	FSC 또는 PEFC 인증 획득
	저위험 국가의 모든 벌목 현장	a) FSC 또는 PEFC 인증 획득 또는, b) 산림 훼손 및 파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야 함
펄프 생산	고위험 국가에서 목재 또는 펄프를 조달하는 모든 시설	FSC 또는 PEFC 인증 획득
	저위험 국가에서 목재 또는 펄프를 조달하는 모든 시설	a) FSC 또는 PEFC 인증 획득 또는, b) 산림 훼손 및 파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야 함

- 펄프 생산자가 목재를 구매하는 경우, 목재 공급자에게 FSC 또는 PEFC를 인증 획득을 요청하거나, 5년 이내에 인증 획득을 위한 계획을 이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펄프 생산자가 산림 및 조림 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FSC 또는 PEFC를 인증받고 있거나, 5년 이내에 인증 획득을 위한 계획을 이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목재 생산 산업(프로젝트)에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할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목재를 생산하도록 장려합니다.

#### [목재 생산 산업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항목]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불법적인 방식으로 별도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을 목재생산 지역으로 (전환)이용하지 않아야 함
람사르 목록의 습지 지역을 목재생산 지역으로 (전환)이용하지 않아야 함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s, HCV)을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림 지역으로 전환하지 않아야 함. 목재생산 지역이 HCV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2001년 이전에 목재생산 지역으로 개발되었음을 목재생산 산업(프로젝트)가 증명해야 함
목재생산 지역이 이탄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엄격한 이탄지대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함
ASEAN 정책 또는 기타 관련 권고사항에 따른 산림소각금지 정책을 보유해야 함
근로자의 안전보건 위험 평가,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함

우리금융그룹은 펄프 생산 산업(프로젝트)에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할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펄프를 생산하도록 장려합니다.

#### [펄프 생산 산업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항목]

펄프의 표백 공정이 필요한 경우, 무염소표백(Elementary Chlorine Free) 또는 완전무염소표백(Totally Chlorine Free) 기술을 도입·적용해야 함
국제금융공사(IFC)에서 제시하는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배출 지표(유속, pH, TSS, COD, BOD, AOX, N, PS 등)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근로자의 안전보건 위험 평가,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함

### **3) 석탄 및 석유 (KSIC: B05, D35)**

#### **소개**

우리금융그룹은 지구온난화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금융부문 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제로에 맞추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은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정에 맞춰 SBTi 등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단계적 석탄 및 석유 산업 퇴출에 관한 공약(Commitment)과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Plan Zero 100"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의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 **약속**

우리금융그룹은 탄소중립 비전인 "Plan Zero 100"에 따라, 2050년까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Zero"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전환 금융을 추진함으로써, 석탄 및 석유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이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행 리스크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탄소·무탄소 발전 전환 금융 확대, 실물경제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Positive 전략과 더불어, 신규 석탄 및 석유 채굴·시추·제조·운송·발전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탈석탄 선언과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를 축소하는 Negative 전략을 동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 Zero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의 '3. 조직체계'를 통해 연 1회 이상 본 모범규준을 검토합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물리적 위험 변화,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에 필요한 국가별 법률 및 규제 변화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석탄 및 석유 산업 부문 단계적 퇴출 약속에 따라 매년 해당 산업 부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현황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실행**

우리금융그룹은 석탄 채굴, 석유 시추 사업을 영위하거나, 석탄 및 석유의 개발 및 활용에 관여하고 있는 산업 부문(프로젝트)과의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기업대출 또는 매장량 기반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석탄 채굴, 석유 시추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다음의 석유 산업 부문(프로젝트)에 대해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합니다.

### [신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

비전통 석유 <sup>1</sup> 관련 사업모델을 보유한 산업(프로젝트) 중 수익의 1/3 미만이 비전통 석유에서 발생하는 경우
비전통 석유 관련 사업모델을 보유한 산업(프로젝트) 중 석유의 탐사 및 시추 활동의 1/3 미만이 북극 석유와 관련된 경우
비전통 석유 관련 사업모델을 가진 산업(프로젝트) 중 탐사 및 생산 활동의 1/3 미만이 초심층수(Ultra Deep Water) 석유와 관련된 경우

또한, 다음의 석유 산업 부문(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5년 이후에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금지 대상]

비전통 석유 관련 사업모델이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프로젝트)
비전통 석유를 조달받기 위해, 대규모 파이프라인 또는 수출 터미널을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프로젝트)
아마존을 포함한 열대우림 지역 내 석유 시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의 석유 탐사, 시추와 관련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프로젝트)

비전통 석유 관련 산업(프로젝트)과의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은 신용거래, 기업여신, 채권인수,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정부 또는 유관기관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단기금융상품, 사모자산, 직접재산, 지수파생상품, 우리금융그룹이 운용하지 않는 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제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패시브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지수 개발 원칙 및 방법론을 따르며,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비전통 석유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지수 추종 펀드가 비전통 석유 관련 산업(프로젝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해당 산업(프로젝트)의 경영진이 비전통 석유 관련 사업을 축소 및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천연가스(LNG)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적도원칙에서 관리하고, 해당 적도원칙 기준을 우선 준용합니다.

<sup>1</sup> 오일샌드(Oil sands / Tar sands), 초중질유(Extra heavy oil), 치밀오일(Tight oil), 세일오일(Shale oil), 세일가스(Shale gas), 치밀가스(Tight gas), 석탄층메탄가스(Coalbed Methane) 및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의 비전통자원

## 우리금융그룹 화석연료 여신 및 투자 가이드라인

### 서문

우리금융그룹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irc}\text{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금융부문 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중립(Net-Zero)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UNFCCC)'의 파리협정 목표와 일정에 따라, SBT(Science Based Target) 등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적의 금융부문 배출량 감축 경로를 이행할 것입니다.

본 화석연료 여신 및 투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채굴, 석탄화력발전, 화석연료 인프라 운용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포함한 여신 및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우리금융그룹의 약속이자 이행방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일정에 따라 화석연료 채굴, 석탄화력발전, 화석연료 인프라 운용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계획 또는 의향이 없는 프로젝트(또는 차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래스고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에서 제시하는 권장사항에 따라, △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이행에 대한 중간목표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 우리금융그룹의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또는 차주)의 전환계획 평가, △ 화석연료 채굴 및 사용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포함한 여신 및 투자 현황을 책임있고 투명하게 공시할 것입니다.

### 거버넌스, 목표, 검토, 공시

우리금융그룹은 연 1회 이상 ESG협의회를 개최하여, 본 가이드라인이 화석연료 채굴, 석탄화력발전, 화석연료 인프라 운용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여신, 투자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ESG협의회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과정에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변화, 전환 경로 및 미래 잠재 리스크, 정부 또는 규제 처리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검토 및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또는 차주)의 탄소배출량 누락(Emission Leakage)<sup>2</sup> 행위 또는 도덕적 해이 행위<sup>3</sup>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 1) 정부 수준 검토 사항

우리금융그룹은 석탄화력발전소(CFPP, Coal-Fired Power Plant)가 위치한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 강도,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기온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과학적 방법론 기반 감축 경로(예: 국가 차원의 신규 석탄발전 금지 또는 구체적 석탄발전 퇴출 기한)와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국가별 전력그리드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탈석탄발전소 구현 기술, 완전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및 전력 수급조정 등에 관한 계획도 평가합니다.

## 2) 기업 및 자산 수준 검토 사항

우리금융그룹은 화석연료 채굴 기업, 석탄화력발전 기업, 화석연료 관련 인프라 운용 기업 등 화석연료 관련 전후방 산업의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sup>4</sup>을 확인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기온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금융부문 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매년 석탄화력발전 및 화석연료 채굴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주, 지원규모 등 감축 이행현황을 관리 및 공시할 것입니다.

### 석탄 및 석유 관련 여신 및 투자에 대한 단계적 축소 기준 및 제한 사항

석탄 채굴  
및  
석유 시추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 연간 생산량이 2,000만 톤을 초과하거나 매출 비중이 1/3 이상인 경우
  - 석탄 및 석유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없음

<sup>2</sup> 주요 석탄화력발전소(CFPP) 외, 드러나지 않은 CFPP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

<sup>3</sup> 적극적 탈석탄 이행계획을 선언하였으나, 정부 정책자금 수혜 또는 자체 수익성 확보 위해 석탄 사용을 늘리는 경우

<sup>4</sup> 산업(또는 기업)이 선언한 탈석탄 선언 및 이행계획,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검증한 에너지 전환 계획

<p>석탄 및 석유를 통한 발전</p>	<p>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석탄 및 석유 화력발전 설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li> <li>• 석탄 및 석유를 통한 화력발전량이 10GW를 초과하는 경우</li> <li>• 에너지 믹스 생산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이상인 경우</li> <li>• 석탄 및 석유 기반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없음</li> </ul>
<p>석탄 및 석유 관련 인프라</p>	<p>주요 사업이 석탄 및 석유 관련 인프라(예: 석탄 운송)를 영위하는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또는 확장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li> <li>•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이상인 경우</li> <li>•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신뢰할 수 있는 공개 계획이 없음</li> </ul>

### 가이드라인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비전통 석유 관련 기업과의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은 신용거래, 기업여신, 채권인수,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정부 또는 유관기관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단기금융상품, 사모자산, 직접재산, 지수파생상품, 우리금융그룹이 운용하지 않는 펀드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제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패시브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지수 개발 원칙 및 방법론을 따르며,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비전통 석유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지수 추종 펀드가 비전통 석유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비전통 석유 관련 사업을 완화 및 축소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 4) 광산 (KSIC: B06, B07)

### 소개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광물 판매로 발생한 자금을 비윤리적인 행위에 사용하는 등 광산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모범규준에서 정의하는 광산 산업(프로젝트)은 금속광물(금, 은, 동, 아연, 철 등), 비금속광물(석탄, 흑연, 납석, 석회석, 운모 등), 방사성광물(우라늄 등)의 채굴에 관여하는 기업, 거래처, 자산, 프로젝트 또는 수익자를 의미합니다.

### 약속

우리금융그룹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 근로자 안전·건강 보장, 지역주민 재산권·생활권 존중, 정부기관 포함 지역사회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책임있는 광산업을 장려합니다.

### 실행

환경·사회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광산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시, 우리금융그룹은 해당 산업(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사회 위험 심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당한 위험이 확인되는 광산 산업(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경·사회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과정을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광산 산업(프로젝트)은 1차 하청업체가 광산 산업(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심사(평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1차 하청업체가 해당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광산 산업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항목]

상수원 보호, 용수 재활용, 수질오염물질 저감
대기오염물질 저감
서식지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폐기물 배출 저감
광산 현장 친환경 해체 및 복원
근로자 및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 증진
공공분야 포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역사회와 협의 및 공시

우리금융그룹은 광산 산업(프로젝트)이 '국제금융공사(IFC)의 광업 및 건설자재 채굴에 대한 환경, 보건 및 안전 가이드라인', '광업투명성 이니셔티브(EITI)', '국제광업금속위원회', 보안 및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보안 서비스)'을 도입하고 있거나, 관련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환경·사회 측면에 상당한 위험을 잠재하고 있거나, 부정적 영향력이 예상되는 광산 산업(프로젝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합니다. 환경·사회 위험 모니터링을 통해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우리금융그룹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구까지 보고합니다.

- ① **[석탄 채굴]** 석탄 채굴 관련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화력발전에 필요한 석탄 또는 점결탄 채굴 활동과 관련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의 경우, 해당 산업(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 대응 및 완화 계획, 수질오염 저감 방안,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 계획,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 등 환경·사회 위험을 점검합니다.
- ② **[우라늄 채굴]** 우라늄(또는 기타 방사성 물질) 채굴 작업과 관련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의 경우, 방사성 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제거, 방사성 광물찌꺼기 처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심사합니다. 또한, 채굴된 우라늄(또는 기타 방사성 물질)이 사전 정의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 ③ **[지역(원)주민]** 지역 원주민 전통적으로 소유, 운영, 임대하고 있는 농업용지, 경제활동구역, 생활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우리금융그룹의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합리적 증거가 있을 경우, 광산 산업(프로젝트)에 제공한 금융 및 투자자금 사용이 '국제금융공사(IFC) 성과 표준 7 – 원주민'의 핵심목표와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때,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의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획득하였는지도 점검합니다.
- ④ **[적도원칙]** 광산 산업(프로젝트)과 연관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 서비스, 프로젝트 관련 기업 대출, 브릿지론, 프로젝트 관련 인수 금융 등 특정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적도원칙에 따라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도원칙은 프로젝트 관련 거래에서 환경·사회적 위험을 결정,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관리 모범규준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최종 승인 전에 전담부서에 제출 및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광산 산업 관련 금지 활동

우리금융그룹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s)에서의 광물 채굴, 광물찌꺼기(광미)의 불법적·비윤리적 매립, 산지정상채굴(Mountaintop Mining), 석탄화력발전용 석탄 채굴, 인권침해와 연관된 다이아몬드 채굴, 지역 원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권 침해, 기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등의 환경·사회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광산 산업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보존가치 높은 지역에서 사업활동

광산 산업(프로젝트)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s, HCV)'이나 국제기구 및 단체 등에서 지정한 '보호지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HCV 지역이란 원시림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위협받는 서식지, 멸종 위기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밀집된 지역, 또는 문화적 또는 종교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 등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정된 HCV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 또는 람사르 국제중요습지 목록에 등재된 지역이 포함됩니다.

### 광물찌꺼기(광미) 매립

광물찌꺼기(광미)를 하천이나, 해양에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적치 및 처리하는 광산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단,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저감하거나, 광물찌꺼기(광미)를 적치 및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 산지정상 채굴

'산지정상 채굴(Mountaintop Mining, MTM)'로 광산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MTM 방식의 광산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의사결정 시, MTM 광물 생산량 및 추이, 광물 거래처 등을 파악하여, 환경·사회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본 모범규준 적용 여부를 별도 판단합니다.

### 석탄화력발전용 석탄 채굴

전체 수익의 25% 이상이 화력발전용 석탄 채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산업(프로젝트)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단, 화력발전용 석탄 채굴 산업(프로젝트)가 중장기 관점의 에너지 전환 전략 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전략 및 이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등을 실행할 것입니다.

### **다이아몬드 채굴 및 거래**

우리금융그룹은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KPCS) 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비가공 다이아몬드의 채굴 또는 거래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금융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역 원주민 이주**

국제적인 모범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한, 5,000명 이상의 원주민 이주를 수반하는 광산 산업(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모범관행에 부합한다는 것은 국제금융공사(IFC)의 '환경·사회 성과 관리 표준'에 부합하고, 필요 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받았으며, 지역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실행 계획(Resettlement Action Plan)'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인권침해**

우리금융그룹은 근로자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및 비인도적 대우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및 원주민에 대한 폭력, 협박, 감금, 차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광산 산업(프로젝트)과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 7. 주제별 가이드라인

### 1) 생물다양성

#### 소개

우리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번영과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많은 다양한 경제 분야에 자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자이며 예를 들어 수질 정화, 홍수 예방, 수분 및 탄소 제거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서식지 파편화, 황폐화 및 파괴',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결과로 숲, 바다, 강, 토양의 과도한 개발', '지구의 생물학적 복원 능력을 초과하여, 오염 및 기후 변화를 초래', '국가간 거래 활성화로 인한 침입(외래) 종의 유입'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약속

우리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The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지지합니다.

#### 실행

우리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보전을 위해 중요한 서식지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산업(프로젝트)에 대하여,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강화된 심사 및 진단·실사 과정을 수행합니다. 해당 산업(프로젝트)이 3-5년 내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의사결정 또는 자체심의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보전가치(HCV) 지역 또는, 국제 과학계 등에서 고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원자재 생산, 조달,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사업활동에서 토지를 황폐화시키지 않는 산업, 또는 토지를 보전 및 복원할 계획과 전략을 마련한 산업(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에서 2008년 이후 개간되거나 개조된 토지에서 생산된 육류, 작물을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산업(프로젝트)를 대상으로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CITES(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관리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제품 또는 종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CITES 승인을 받은 산업(프로젝트)에 한해,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할 것입니다.

### 사업기회 촉진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산업이 맹그로브 숲과 같은 생물다양성과 세계 자연 서식지 보존 및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고 육상·해양 서식지 보전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에 필요한 금융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탄소 발자국 저감

우리금융그룹은 산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정적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아래의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① 친환경(녹색) 건축 표준 및 인증을 참조하여, 친환경 원자재 선택, 에너지 효율 기술 적용,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개선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② 우리금융그룹 임직원, 개인고객, 기업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감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상품을 운용합니다.
- ③ 산림자원의 유지-보전-복원-확대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며, REDD+ 사업 등과 연계하여 획득한 감축실적은 탄소중립 달성을 과정에 활용합니다.

## 2) 기후변화

### 소개

우리금융그룹은 ESG 전략의 일환으로 TCFD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석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화력발전 부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심의를 강화하는 등 금융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에 기여할 것을 핵심 ESG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 약속

우리금융그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금융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 ① 자체 배출량 감축

우리금융그룹은 재생에너지 조달 및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42% 감축, 2044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② 금융 배출량 감축

우리금융그룹은 UNFCCC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정에 맞춰 금융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산업계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27% 감축, 2040년까지 56%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③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우리금융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취약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 기업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취약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 실행

#### 자체 배출량 감축

우리금융그룹은 'Plan Zero 100'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SBTi 권고사항에 따라 2022년을 기준연도로 삼고 1.5°C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매년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4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44년까지 내부 배출량(Scope 1&2)의 탄소중립(Net-Zero)를 달성할 것입니다.

## 금융 배출량 감축

에너지, 시멘트, 알루미늄, 운송 및 자재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 부문은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산업 부문에 대한 자본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구 온난화 등과 같은 기후변화 위험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석탄 및 석유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석탄 및 석유 산업(프로젝트)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금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집약적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석탄 및 석유 산업과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환계획을 유도 및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이 에너지 체계를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경우 금융·비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자산 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을 식별 및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 ① 발전용 석탄 또는 타르샌드 추출 사업을 수행하여 일정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 ②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와 2°C 이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전환 리스크에 취약한 석유 집약적 산업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 생태계로 전환함에 따라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석유 관련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 ③ 또한, 석유, 전력 유ти리티 기업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및 관련 국가별 정책방향 이행 여부를 평가합니다. 파리협정 및 관련 정책방향에 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포함한 투자책임자 승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사결정 이후에도 적극적 관리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 ④ 천연가스(LNG) 산업(프로젝트)는 적도원칙에서 관리하고, 해당 적도원칙 기준을 우선 준용 합니다.
- ⑤ 우리금융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자산 취약성에 노출된 다른 금융기관의 사례, 대응방안, 향후계획 등을 조사 및 벤치마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3) 순환경제

#### 소개

순환경제 개념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의 소비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선형 구조의 조달-생산-판매 방식이 아닌, 원재료 및 제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더불어, 회수를 통한 재활용 재사용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의 주요 아젠다이며,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모델은 환경, 기후,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순환경제는 원료, 제품 및 자산의 가치, 사용 및 수명을 증대하며 생산 및 소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공합니다.

#### 약속

우리금융그룹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인 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제품 수명 연장 및 수리가능성 증진, 폐기물을 활용한 새로운 재화의 생산 등 혁신적인 순환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실행

우리금융그룹은 순환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업(프로젝트)의 규모, 발전수준, 기술적 잠재성, 가치사슬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여부를 의사결정합니다.

순환경제 분야의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여부를 판단할 시, 우리금융그룹은 UNEP FI의 Resource Efficiency and Circular Economy Target Setting Guidance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 산업(프로젝트)가 환경·사회적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환경·사회 영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 이행계획의 보유 여부를 심사합니다.

## 8. Appendix

- Business Ambition for 1.5°C : UN Global Compact, SBTi에서 주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써,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 정부-학계-산업계의 적극적 행동변화 촉구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CDP가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산업계의 기후변화 관련 대응수준 등을 평가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무분별하게 포획, 채취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로 한 국가들의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EP(Equator Principles) : 프로젝트 총액이 US\$10백만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금융기관 자발적 협약
-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 국제 NGO인 '산림관리협의회'.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생산된 임산물, 산림을 훼손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생산된 산림자원에 대해 공인된 인증(Certification) 부여
-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 국제식품안전협회로, 글로벌 식품 산업 ·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식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식품안전 기준 제정, 안전관리 기술적 협력, 대내외 지식공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협의체
- GFANZ(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결성된 그룹으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금융기관의 연합체. 지구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고자 금융기관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 수행
- Guidance on Resource Efficiency and Circular Economy Target Setting :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서 제시한 지침서로서,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대상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련 목표수립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 HCV(High Conservation Values) : 국제삼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개발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구분한 개념으로서, 산림의 환경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
- HCS(High Carbon Stock) : '고탄소보존지역'은 지표면에 다량의 탄소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 기후변화 대응(탄소 포집 및 저장)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

- 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나 협력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개발도상국에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업체가 준수해야 할 환경/사회 성과표준
- IUCN Category :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서 지정한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에 대한 분류체계. 엄정자연보전지(Ia), 원시야생지역(Ib), 국립공원(II), 자연기념물 및 특징적 장소(III) 등으로 분류
-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로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구체적 기술적 요건(Technical Criteria)을 제시
- 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블러드(강제노동)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세스. 해당 프로세스는 다이아몬드의 구매가 적법한 정부에 대한 반란/전복과 관련된 단체의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보증
- NZBA(Net-Zero Banking Alliance) : 2050년까지 대출, 투자 등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기관 연합체로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확산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과 공시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로, 각 금융자산군에 특화된 탄소배출량 산정 절차, 기준, 방법에 관한 지침서 제공
- PEFC(Program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과정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존, 이산화탄소 흡수, 환경오염 저감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목재 및 펄프 등에 대해 공인된 인증(Certification) 부여
- PRB(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주도 금융기관이 사업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 요소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벤치마크(자가진단 지표 및 기준)를 개발
-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 팜유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팜유에 대한 공인된 인증(Certification) 기준 마련
- RTRS(Roundtable on Responsible Soy) : 대두(콩)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대두(콩)에 대한 공인된 인증(Certification) 기준 마련

-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 파리기후협약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산업계에서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해당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신뢰성을 인증하며, 목표 이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위원회(FSB,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의뢰하여 개발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시'에 관한 원칙으로,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
- UNEP FI(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 유엔환경계획(UNEP)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활동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이니셔티브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인을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및 금융기관 협력 추진
- UN Global Compact : UN(United Nations)에서 창설한 이니셔티브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사업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킬 것을 권장
-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인권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지침서'로서, 보호 (Protect), 존중 (Respect), 구제(Remedy) 관점에서 인권존중을 요구